##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26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이해민·서왕진·김재원

박은정・조 국・차규근

황운하 · 김선민 · 김준형

한민수 · 신장식 · 강경숙

유건영 • 김우영 • 정춘생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기피당한 위원의 기피신청 결정 배제나 의사진행 정지 등의 규정은 미비함.

이로 인해 기피당한 위원이 본인의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거나, 기피신청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하는 등 기피신청제도가 형해화 되어 기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대주주변경 승인 결정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계획안 의결 당시 제기된 기피신청에 대해 외부의 법률자문 없이 기피당한 위원장과 위원이 스스로 기피신청을 각하시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가 법정제재에 대한 재심요구시 제기한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면서 사유 조차 공개하지 않았음.

이에 기피당한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의 진행을 중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이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이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기피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 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같은 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⑦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은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기피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피신
	청의 대상인 위원이 기피신청
	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위원회의 기피 결정이 있는
	<u>것으로 간주한다.</u>
<u>&lt;신 설&gt;</u>	⑤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⑥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같은 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
	<u>다.</u>
<u>&lt;신 설&gt;</u>	⑦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은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u>④</u> (생 략)	<u>⑧</u> (현행 제4항과 같음)